

聯結財務諸表와 韓國企業

朴 漢 鉞

- I. 序 論
- II. 聯 結
- III. 國際比較
- IV. 聯結納稅 申告制度
- V. 聯結財務諸表와 商法
- VI. 日本 聯結財務諸表의 實態
- VII. 韓國 聯結財務諸表의 實態
- VIII. 結 論

I. 序 論

從來의 企業會計 原則은 財務部 告示에 依據 定해졌으나 法律에 根據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強制的 拘束力은 없고 또 그 內容도 會計處理의 統一性和 客觀性을 期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改正된 證券去來法에 根據하여 大統領令으로, 企業會計 原則을 財務部令으로 財務諸表 規則을 法制化하여 證券去來法의 規制를 받는 公募 및 上場企業은 義務的으로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統一的인 會計處理基準을 만들어야 한다. 이 改正案 內容에 聯結財務諸表 作成을 要求하고 있다. ⁽¹⁾

이 改正案 內容을 財務諸表規則案을 通하여 보면 제4條에 關係會社의 定義가 있으며 關係會社라 함은 法의 規定에 依하여 財務諸表를 提出하는 會社가 他會社에 對하여 또는 他會社가 財務諸表 提出會社에 對하여 아래 各號의 1에 該當되는 關係를 가지는 경우에는 財務諸表 提出 會社에 對하여 當該關係를 가지는 會社를 말한다.

1. 그 發行 株式總數의 100分之 50 以上을 所有하고 있는 關係.
2. 財務諸表提出 會社의 100分之 50 以上을 所有하는 株主가 他會社의 100分之 50 以上の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關係.
3. 그 發行株式總數의 100分之 50 以上을 所有하고 있고 그 他會社가 第3會社의 發行株式

* 法經大學 經營學科 助教授

(1) 高麗大學校, 企業經營研究所 創立 第15周年記念, 세미나 主題發表論文集, 1973. 11. 19 pp.3-5.

總數의 100分의 50 以上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 그 所有比率의 相乘積이 100分의 50 以上이 되는 關係.⁽²⁾

위와 같은 움직임은 資本市場 育成을 爲하여 即 投資家 保護를 爲하여 會計處理의 慣行育成에 앞서서 法으로서 強制的으로 聯結關係가 있는 企業에 聯結財務諸表 作成을 要求할 時期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企業活動은 自由競爭下에서 더욱 熾烈하게 되고 企業의 存續을 爲하여 더욱 擴張을 하게 되며 結果資本이 集中되고 企業이 大型化 하게 된다. 企業의 集團化가 形成되면 이 集團을 이루는 個個會社의 財務諸表로서는 全體會社의 經營成績 및 財政狀態는 正確히 把握하기 어렵다. 이때는 聯結關係가 있는 모든 會社의 財務諸表를 綜合하여 單一企業으로서의 하나의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해야 한다.

우리 經濟社會도 1960年代부터 成長을 繼續하고 있으며 特히 企業公開를 獎勵하고 있는 政策下에서 적지 않은 獨寡占企業의 出現과 企業의 系列化 現象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大企業 또는 財閥들이 國際舞臺에서 競爭力을 發揮하기 爲해서는 國際資本의 誘致가 期待되며 또 外國企業과의 提携關係가 있을 때는 반드시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企業과 聯結財務諸表間의 問題點을 檢討하여 보려 한다.

II. 聯 結

聯結이라 하면 會計實務家들에게는 魔術的이며 特殊하고 또 難解한 會計에 關한 問題라고 생각하여 普通 사람들은 近接하기 어렵다고 하는 印象을 준다. 그러나 많은 會社에서는 本支店會計 處理를 하고 있으며 本支店 計定合計에서 內部 去來에 關係있는 여러 計定을 除去하여 財務諸表를 作成하고 있으므로 聯結業務의 相當量은 이미 實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本支店會計의 境遇는 結合할 때 聯結에 特有한 調整은 包含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會社가 새 工場을 建設하는 境遇 工場會計를 같은 會社內의 單位로서 두지 않고 別個의 會社로서 設置할 때, 聯結의 概念이 생긴다. 새 會社는 別個의 法人이나 父 會社가 그의 株式의 全部를 所有하고 있으면 새 會社는 事實 父 會社의 한 部門에 不過하며 本社와 工場會計를 結合하여 하나의 企業單位의 財務諸表를 作成함으로써 父子 會社 會計를 聯結한 企業單位의 財務諸表는 會社마다의 個別 財務諸表보다 그 企業集團의 實體를 본다는 點에서 意味가 깊다.⁽³⁾

(2) 韓國公認會計士會, 會員研修教材, 財務諸表 規則案, 1973年度, pp. 4—5.

(3) 富田岩芳, 伊藤勝夫共著, 聯結財務諸表, 日本經營出版會, 1968, p. 3.

둘 以上の 會社의 財務諸表를 한 企業單位의 財務諸表에 聯結한다는 것은 本支店 會計의 境遇에 比較하여 다만 法律上 別個의 會社를 한 會社인 것처럼 擬制하고 또 聯結에 隨伴하는 特殊한 會計節次도 있다. 上述한 工場新設을 爲하여 別個會社를 設立하는 境遇에 父 會社의 投資計定과 子 會社의 資本金은 同額임으로 이 兩計定은 消去한다. 또 子會社의 製品을 父會社가 買入하여 全量을 販賣한 境遇에는 그 製品에 對해서는 兩會社의 賣出과 賣出原價는 同一金額임으로 兩計定을 消去한다. 또 期末의 兩會社間의 外上賣出金과 外上買入金은 同額임으로 이것도 消去한다. 子 會社의 製品이 父 會社의 期末 在庫로서 남게 되는 境遇 在庫額만큼 子 會社의 賣出이 父 會社의 賣出原價를 超過한다. 그의 在庫額은 子 會社의 賣出原價에 未實現利益을 加한 것이므로 雙方을 子 會社의 賣出과 相殺하여 子 會社의 內部 賣出을 完全히 消去한다. 또 兩會社間에 資金의 貸借이 있는 境遇 期末殘額은 同額임으로 消去함과 同時에 利子의 收入과 支出을 消去한다.

만약 父 會社가 發行한 支給 어음을 子 會社가 銀行에서 割引하였을 때는 父 會社의 支給 어음 計定과 子 會社의 받을 어음 計定을 消去하여 子 會社의 割引 어음 計定을 消去하여 子 會社의 割引 어음 計定을 銀行借入金으로서 聯結貸借對照表에 表示한다. 또 父 會社의 固定資產을 子 會社에 利益을 없이 時價로서 賣却하였을 때는 그 賣却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고 當年度의 賣却利益 子 會社의 固定資產에 包含되는 未實現利益을 消去함과 同時에 子 會社의 固定資產의 減價償却費를 父 會社의 原價에 따라 全耐用 期間에 걸쳐 計上한다. 子 會社에서 父 會社에 配當金を 支給時 現金이란 單純한 資産의 移動에 不過하며 父 會社의 利益은 되지 않으므로 聯結에서 受入配當金과 支給配當金を 消去한다. 위에 든 것을 보면 聯結에 따르는 特殊手續의 大部分은 本支店會計의 結合手續에 類似하며 다만 別個의 會社間의 計定消去임으로 計定의 名稱이 相異한 것 뿐이란 印象을 주고 있다. (4)

未實現利益에 對하여 課稅하는 境遇에는 稅金을 當期費用에 包含시키면 期間損益을 減少시킨다. 結果的으로 先給稅金으로 處理된다. 聯結이 複雑한 경우는 新設의 100%, 子會社가 아니고 既成會社의 全株를 買入한 경우이며 더욱이 既成會社의 株式이 100% 未滿을 買入하여 外部株主가 生기는 경우이다. 또 買入이 一時에 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段階的으로 行하는 경우이다.

既成會社의 發行株式을 買入하는 境遇에는 父 會社의 投資額과 子 會社의 純資産(資本)의 帳簿價格은 普通 一致하지 않는다. 父 會社의 投資額이 子 會社의 純資産額보다 클 때는 그 差額은 連結貸借對照表의 借邊에 나타나고 反對의 경우에는 貸邊에 나타난다. 이 差額을 積極的 營業權, 消極的 營業權 또는 聯結調整 計定이라 한다. 慣習上 大會社가 中小企業을 系

(4) H.A. Finney, Herbert and E. Miller, Principles of Accounting Advanced (Prentice-Hall, Inc. 1960). pp. 376 ~385.

列化하는 境遇 中小企業이 財政上 困雜할 때가 많기 때문에 株式의 讓渡價格이 싸다. 이런 事情下에서는 大會社의 連結差額은 貸邊에 오는 경우가 많다. 反對로 美國에서는 大會社에서 收益力이 나쁜 會社는 賣却하고 收益力이 좋은 會社를 意慾的으로 買入하는 경우에는 大會社가 서로 買入하려 하므로 連結差額은 借邊에 올 수가 있다. 特히 物價가 올라가는 現代에는 建設費가 싸고 또 좋은 收益實績을 가지고 있는 企業들이 純資產額을 초과하는 時價에 팔리는 경우가 많다. 連結이란 企業集團內의 여러 會社의 計定을 集計하여 對照하며 不一致가 있으면 調整하고 消去하는 一連의 節次를 말한다.⁽⁵⁾

連結財務諸表의 作成目的

連結財務諸表의 目的은 父 會社의 株主 및 債權者를 爲하여 父 會社를 爲主로 從屬會社와 의 集團關係를 支店 또는 事業部를 가지는 單一企業과 같이 보아 그 企業集團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表示하는데 있다.

連結財務諸表의 機能으로서,

첫째 : 連結財務諸表는 支配會社의 株主 및 將來의 投資家에 對하여 重要한 投資判斷資料를 提供한다. 또 從屬會社의 外部 株主 等에 對해서도 有益한 會計情報를 提供한다.

둘째 : 連結財務諸表는 債權者가 그의 信用을 提供할려 할 때 그 意思決定에 對하여 貴重한 判斷資料가 된다.

셋째 : 連結財務諸表는 支配會社의 經營者에 對하여 管理上 有益한 指針을 提供한다.

넷째 : 連結財務諸表를 基盤으로 連結稅務申告制度를 樹立하면 企業課稅方法의 改善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을 期待할 수 있다.

다섯째 : 連結財務諸表의 制度는 會計實務를 國際的 水準에 올리는데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 連結財務諸表의 作成은 企業集團에 屬하는 企業相互間에 있어서 利益 및 財政狀態의 表示上 操作을 防止할 수 있다.

父 會社가 그 製品을 子 會社에 賣出하면 會計原則上 內部去來의 金額 및 父 會社의 純利益에 미치는 影響을 公開하는 것이 必要하나 商法上으로는 賣買利益이 記錄되고 結果 配當의 對象이 된다. 그러나 連結을 한다면 內部利益은 消去되고 內部利益에서 나가는 配當은 있을 수 없다. 또 連結稅務申告制度를 採擇한다면 從來 行하였던 內部利益에 對한 課稅 即 連結을 함으로서 稅金의 先給은 廢止되고 企業集團이 外部에 對한 利益을 實現할 때까지는 稅金에 對한 債務는 지지 않는다. 또 缺損會社의 境遇 連結에 依하여 다른 會社의 利益과 相殺되어 稅金의 反還을 받는 것과 같은 效果를 낳는다. 結果 連結財務諸表가 父 會社의 株主에 對한

(5) Griffin, Williams and Larson, Advanced Accounting, Revised Edition (Irwin, Inc. 1971), pp. 214~225.

報告用으로도 採用이 되고 聯結稅務申告가 認定된다면 未實現利益에 對한 配當流出과 稅金支給도 같이 없어지고 또 集團內의 缺損會社의 損失金은 配當 및 課稅의 對象利益에서 控除되며 企業集團의 財政의 健全化에 이바지 한다. 聯結財務諸表에 對한 反對論은 法律家가 提起할 것임. 別個의 會社間에 成立한 去來를 內部去來로서 消去하는 것은 所有權의 否定이 아닌 事가 생각된다. 또 父 會社의 所有權이 直接 미치지 않는 子 會社의 資產 또는 債務가 있는 것 같이 表示하는 것은 法律家의 立場에서 納得하기 困難할 것이다.

社會的 條件, 聯結財務諸表의 必要는 支配會社를 中心으로 하는 集團企業의 出現에서 생긴다. 企業合併은 企業合理化의 要請과 國際競爭에 刺激되어 近年增加하고 있다. 이것은 둘 以上の 企業單位가 合併하여 法律 및 經營上 한 企業單位가 되며 支配 및 業務遂行이 統合되어 行해지는 形態다. 이와 같은 効果는 法律上의 合併을 하지 않고서도 企業間에 支配從屬關係를 가지므로서 達成된다. 支配從屬關係란 하나의 企業이 다른 企業의 政策決定 및 事業活動을 支配하며 따라서 後者は 前者에 從屬하는 關係이나 普通 從屬會社의 發行된 議決權株式數의 過半數를 支配會社가 所有함으로써 從屬會社의 理事會의 意思決定을 支配하여 過半數의 株式所有를 普通 一般的 支配從屬의 基準으로 하고 있다.⁽⁶⁾

企業의 成長은 여러가지 形態로서 된다. 現存 會社內에 支店工場 등을 新設하는 것도 한 方法이다. 또 새 會社를 設立하여 既存의 事業을 父 會社로부터 分離하여 獨立 企業으로서 經營하기도 한다. 父 會社의 經營成績에 不利한 影響을 주는 赤字事業은 이런 方法에 依하여 父 會社로부터 分離하여 採算이 好轉될 때까지 別途企業으로 經營한다. 新規企業을 發足시키기 爲하여 새 會社를 設立하고 採算이 安定된 뒤에 父 會社에 吸收合併한다고 하는 過程도 普通 取해진다. 가장 容易한 企業成長의 方法은 既存의 會社를 支配統制下에 넣는 것이다.

普通 去來關係가 없는 會社의 株式를 갑자기 取得하는 例는 드물다. 通常 製品 또는 用役의 繼續的 賣買에 依하여 相互의 利害關係가 一致한 뒤에 系列化가 된다. 既存企業의 取得은 新規企業의 創立에 比하여 아래와 같은 利點이 있다.

첫째 : 子 會社의 經營成績 및 財政狀態는 곧 當期의 決算에 算入된다.

둘째 : 이미 立證이 된 企業임으로 未知의 事業要素가 적다.

셋째 : 經營者 및 從業員은 이미 確保되어 있고 組織되어 있다.

넷째 : 父 會社가 意圖하는 水平 또는 垂直結合이 바로 實現된다고 하는 利點이 있다.

다섯째 : 100%에 未達하는 株式數를 取得함으로써 적은 資金量으로서 企業을 支配할 수 있다.

株式取得의 代價는 現金이 普通이며 現金이 아닐 경우에는 稅法上으로는 通常 現金相當의

(6) Simons and Karrenbrock, Advanced Accounting,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68. pp. 301~307.

代價로서 評價함으로 現金價格이 投資計定에 表示된다. 美國에서는 父 會社의 株式을 새로 發行하던가 自己 株式을 交付하여 從屬會社의 株式을 取得하는 慣行이 普遍化하였다. 特히 株式의 持分比率 및 經營者가 從前과 같이 存續할 때는 「持分の POOLING」이라 하여 父 會社의 投資計定 및 資本計定은 같이 子 會社의 純資産 價格으로 表示한다. 持分 POOLING에 該當하지 않는 境遇에는 「PURCHASE」라 하여 時價로서 表示한다. 어느 境遇에나 株式의 交換만으로는 課稅되지 않고 從屬會社의 從前의 株主는 新規로 取得한 父 會社 株式을 退職後 等の 所得이 낮은 年度에 賣却하면 累進課稅上 低所得稅가 適用되고 또 資本利得에 對한 半額課稅란 優待措置가 있어 株式交換에 依한 會社取得은 從屬會社의 株主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7)

美國의 聯結財務諸表의 慣行은 現世紀의 始初부터 一般化 되어 오다가 1917年의 聯結稅務申告制度의 創設에 依하여 稅法上의 要件이 된다. 그후에 實施된 戰時超過利得稅는 累進稅率下에서 關係會社間의 課稅所得을 移動하여 稅負擔을 輕減하려는 것을 防止하는 目的을 가졌다. 1921年에는 聯結稅務申告는 選擇할 수 있는 것으로 改正되었다. 1933年에는 證券法の 施行에 依하여 有價證券届出書에 對하여 1934年에는 證券去來法에 依하여 上場申請書 및 有價證券報告書에 對하여 聯結財務諸表가 義務化되고 株式을 公開 또는 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는 會社에 對해서는 聯結財務諸表는 投資大衆에 보다 좋은 財務情報를 公開하기 爲한 要件이 되었다. 聯結稅務申告制度는 그후에 廢止 및 復活의 變遷을 거쳐 現在에는 2%의 特別加稅도 없이 選擇制度가 되어 있다.

投資家가 株式을 選擇할 時 會社의 收益力(一株當 利益)을 主要한 尺度로 하고 이것에 따라서 株價收益率 投下 資本利益率 等の 主要投資指標를 導出하는 慣行이 있는 境遇 聯結財務諸表의 純利益 資産, 負債, 資本 等は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投資家는 拂込資本이 父 會社이던 子 會社이던 利益을 極大化하면 된다. 經營者는 投資家の 期待에 보답하기 위해서 每年한 株當 利益을 增加시키는데 全力을 다한다. 따라서 낮은 收益의 企業은 팔고 높은 收益의 企業은 割増金を 支給하더라도 買入하게 된다. 흡사 비싼 特許料를 支給하고 外國에서 技術을 導入하는 것과 같다.

債權者 特히 銀行이 會社의 收益力을 尺度로 하여 長期融資를 하는 境遇에는 聯結財務諸表 또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또 物的擔保를 要求받는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의 資産을 提供하면 된다. 더욱이 系列內의 여러 會社의 資金을 子 會社에서 集中管理하는 制度를 取하는 경우 父 會社에서 子 會社分을 모아서 資金을 借入하고 그의 擔保에 그들의 資産을 差入하는 手續을 父 會社가 代行하기도 한다. 聯結財務諸表는 年 1회 支配會社의 決算日에 作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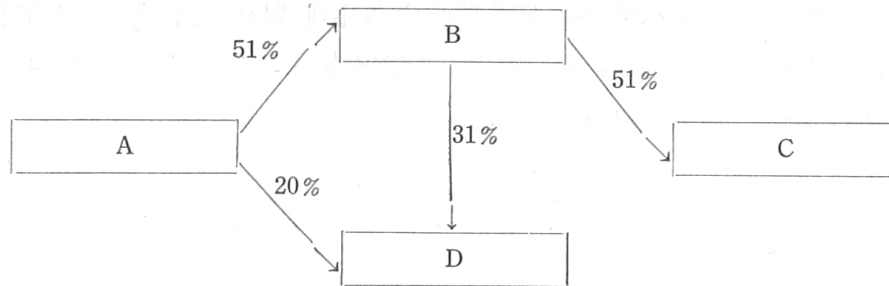
(7) Prentice-Hall, 1970, Federal Tax Course, pp. 3122-3126.

것을 通常 法的要件으로 하나 美國에서는 四分期마다 株主에 對한 報告書에 聯結財務諸表를 記載하는 慣行이 一般化되어 있으므로 會計實務를 國際水準에 合致시키기 爲해서는 商法上의 要求가 없어도 같은 頻度로서 株主에 報告를 하는 것이 좋다.

聯結의 範圍

聯結의 對象이 되는 支配會社와 從屬會社에 對해서는 論議가 많다. 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될 株式總數의 過半數의 株式을 實質적으로 所有하는 境遇에는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發行될 株式總數에서 議決權이 없는 株式은 除外한다. 美國에서는 發行될 株式總數(自己 株式을 除外하고)의 50%를 넘어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어떤 會社가 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境遇만을 聯結의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50%를 넘지 않으면 支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美國의 實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얼마되지 않은 持株數로서도 役員을 派遣하여 父會社의 支配力을 充分히 發揮하고 있는 例도 있다. 例로서 少數의 株式을 가진 多數의 株主가 있어 株主 總會에서 議決權을 積極적으로 行使하지 않고 委任狀을 보낼 때는 一割의 所有株式數로서도 支配力을 行使할 수 있다. 또 理事會의 過半數를 派遣하거나 派遣할 수 있는 狀態 또는 社長을 派遣할 수 있는 경우에는 持株數에 關係없이 支配力을 行使할 수 있다. 特히 惡化된 資本負債比率을 가진 會社가 借入金의 大部分에 對하여 父 會社로부터 融資 또는 保證을 받는 境遇에도 父 會社는 支配力을 行使할 수 있다. 또 融資條件이 3個月마다 更新을 要求하는 短期일 때는 그때마다 支配力을 發揮할 수 있다. 父 會社로부터 製品을 大量 繼續적으로 買入하여 그의 外上 買入金이 負債의 相當部分을 차지할 때는 融資와 같은 支配關係를 갖는다. 反對로 어떤 會社의 製品의 相當한 比率을 恒時 父 會社가 買入하는 경우에는 父 會社는 支配力을 行使한다. 父 會社의 注文의 變動, 買入價格의 高低, 買入量의 增減에는 그 會社의 死活에 關한 것일 것이다. 美國에서는 政府契約을 除外하고는 大量的 注文을 한 會社에 한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 經營者의 常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은 없으나 어떤 경우에는 企業家は 會社의 發展을 爲하여서는 個個企業의 獨立을 制限하더라도 系列化를 하고 있으므로 支配從屬關係가 發生한다.

以上은 嚴格한 聯結範圍에서는 除外되고 있으나 經營管理上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기 爲해서는 이들 會社의 個別財務諸表를 結合하여 聯結과 같은 手續을 한 綜合財務諸表를 作成하는 것이 더 有用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綜合財務諸表가 聯結財務諸表에 比하여 더 重要性을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聯結의 對象인 從屬會社의 株式을 「間接」으로 所有하는 境遇 및 父 會社와 子 會社가 共同으로 어떤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경우를 말한다. 例로서 아래 그림에서 A는 支配會社이며 B, C, D는 各各 從屬會社이다. 其中 A는 B의 株式의 過半數를



直接 所有하고 C 및 D의 株式의 過半數를 間接으로 所有한다. (8)

聯結의 範圍에서 除外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株式保有가 單純히 一時的이라고 認定하는 경우,
2. 從屬會社에 對하여 會社更生 手續開始의 決定 또는 破産의 宣告가 있었을 때,
3. 從屬會社가 在外會社이므로 聯結하는 일이 特히 困難한 事情下에 있는 경우 또는 聯結함으로써 利害關係者의 財務諸表에 關한 判斷을 잘못 傳할 우려가 있을 때,
4. 從屬會社의 營業의 種類, 內容 등이 支配會社의 것과 顯著히 다르며 또 營業上의 關係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財務報告上의 一體性を 缺하는 경우에 該當하는 從屬會社, 其他 이것에 準하는 경우로서 有効한 支配從屬關係가 存在하지 않으므로 組織의 一體性を 缺하는 것으로서 認定하는 從屬關係 또는 聯結함으로써 財務報告에 關한 判斷을 그릇되게 할 우려가 있는 從屬會社,
5. 從屬會社의 規模가 그의 總資産 또는 去來額에 있어서 支配會社에 比較하여 重要性을 認定하기 어려울 程度로 적은 경우에는 그從屬會社를 除外해도 合理的인 判斷을 그릇치지 않은 程度의 경우에는 聯結의 範圍에서 除外할 수 있다.

AICPA 發行의 “會計의 傾向 및 技術” 1965年 版에 依하면 調查對象 600社中 559社는 從屬會社를 갖이고 있고 그中 268社는 從屬會社의 全部를 聯結하고 278社는 從屬會社의 一部를 聯結하고 나머지 會社만이 聯結하지 아니 했다. 聯結에서 除外한 경우의 主要한 것은 在外의 從屬會社의 全部(40社), 在外의 從屬會社中의 地理的 位置에 依한 것(75社), 國內의 從屬會社中 異種의 事業을 하는 會社(14社)이었다. 異種의 事業의 內容은 不動產業 8社, 金融業 5社, 鐵道事業 1社, 野球事業 1社이었다. 美國에서 聯結하는데 있어서 過去 數年間の 傾向은 國外의 從屬會社를 全部 除外하였으나 그후 점차 聯結에 包含시키는 傾向이었다. 外換管理에 依한 送金 困難한 경우 또 현저하게 外換率의 變動, 美國 달러 換算의 財務諸表의 表示 合理性을 缺한 경우 등을 除外하고는 우선 聯結하고 財務諸表의 脚註에 公開하도록 하고 있다. SEC(美國 證券去來 委員會)의 意向은 外國에서 平價切下가 頻發한 경우에도 그러한 外國事

(8) Walter B. Meigs, Charles E. Johnson and Thomas F. Keller, Advanced Accounting, (McGraw-Hill, 1966) pp. 419-445.

業이 國內事業의 한쪽 팔이며 또는 그의 延長이 되어 있고 또 積極的으로 推進되어 있는 경우에는 聯結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換率이 安定되어 있고 送金制限만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送金制限 및 配當可能利益을 脚註에 公開하고 聯結에 包含시키는 것이 妥當하다. 在外會社를 聯結에 包含시키기 爲해서는 在外會社의 資産 및 負債의 換算 및 元貨에 依한 評價에 關한 會計原則을 確立할 必要가 있다. AICPA에서는 不動産賃貸會社의 境遇에 對하여 父 會社가 賃借할 때는 持株比率에 불구하고 聯結을 原則으로 한다.

作成基準

支配會社 및 從屬會社가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이 繼續的으로 企業會計原則에 準據하여 있는 限, 서로 다른 處理의 原則 또는 手續이라도 聯結目的을 爲하여 이것을 統一한다는 것은 반듯이 必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會計處理가 會社間 현저히 相異할 時는 聯結計算上 相殺消去의 手續을 매우 困難하게 한다. 그러므로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은 各會社間 가능한 統一시키는 것이 좋다. 企業集團에는 많은 種類의 事業을 包含하고 있으므로 같은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을 強制하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減價償却法을 例를 들면 어느 事業은 定額法이 適當하고 또 다른 어떤 事業은 定率法과 生産額 比例法이 適當한 경우가 있다. 또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에 있어서는 先入先出法, 後入先出法, 移動平均法 等 業種에 따라 서로 다른 方法을 採用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聯結作業을 迅速히 能率的으로 하기 爲해서는 可能한 限 統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CPA의 「會計原則 雙書」 第2章에서 會計方法의 統一을 바라면서도 同一의 會計原則內에 있어서도 選擇的 方法을 認定하고 獨立한 企業實體間에는 會計의 多樣性이 있는 것은 當然하다 라고 했다. 그러나 每年 多角經營을 원하며 새 分野의 子 會社群을 차례로 取得하고 있는 現狀에서는 서로 다른 業種에 同一의 會計方法을 適用시키면 理論的으로 無理가 생긴다. 實務上의 問題點은 다른 會計方法을 여러會社 또는 數十會社가 選擇 적용하는 경우, 어느 程度의 註記를 要할 必要가 있다. 財務諸表의 讀者에게는 그 必要에 따른 情報를 알려주어야 하나 不必要한 細目으로 번거롭게해서는 아니 됨으로 主要한 會計方法과 그 變更을 記錄하면 充分하다.

聯結의 準備로서 聯合해야할 個別 財務諸表를 公認會計士의 適正意見을 添附한 監査필 또는 이와 같은 狀態에 두는 것을 必要로 한다. Input가 適正하지 않으면 聯結되는 Output는 當然히 適正하지 못하다. 聯結의 準備作業으로서 聯結會社間의 對照項目의 消去 및 合算을 容易하게 하기 爲해서 同一去來에 對해서는 同一項目에 包含시키도록 會計處理를 統一하는 것

은 當然히 必要하다. 同一經費에 對해서도 經費로 處理할 것인가 收益에서 控除할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이것은 聯結集團內에 共通의 聯結會計規定을 配布하여 統一을 할 必要가 있다.

聯結會社間의 去來가 行해질 때 個別財務諸表上의 計定科目을 그대로 財務諸表上의 計定科目으로 할 것인가는 企業集團 全體의 立場에서 決定해야 한다. 이를테면 어떤 聯結會社에서는 在庫品이던 것이 다른 聯結會社가 이것을 設備로서 購入한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當該 在庫資產은 建設假計定으로 대체 表示하는 것이 좋다. 聯結會社間의 去來가 한곳에서는 記錄되고 다른 곳에서는 記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한곳에서 賣出 값짜기를 發生主義로서 記錄하고 다른 곳에서 現金主義로서 記錄하는 경우다. 또 未達計定도 있다. 이를테면 한곳에서 送金하여 다른 곳에서 入金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 한곳에서 在庫資產을 發送하고 다른 곳에서 未受인 경우다. 實務上 聯結會社間의 去來의 明細表를 定期로 交換하여 對照하면 된다. 美國에서는 決算에서 15日前까지는 內部去來를 完了하고 그 以後의 去來는 次期 整理로 한다는 指示까지 내고 있는 會社도 있다. 聯結上 不一致가 있을 때는 聯結上의 消去 및 合算을 하기 爲한 前提로서 聯結對替 및 修正分介에서 論整한다. 繼續性を 變更하는 경우에는 聯結의 範圍를 擴大하는 경우 및 選擇的 會計方法中 다른 方法으로 變更하는 경우가 主로 豫想되고 같이 適正한 財務報告가 될 수 있는 內容을 갖추고 있을 때는 좋다. 이런 경우 보다 더 좋은 會計 慣行으로서는 前期 以前의 財務諸表를 遡及해서 變更後의 狀態에 表示하여 고쳐두는 것이다. 결과 財務諸表의 期間比較에 더 有用性を 發揮할 수 있다. 이 慣行은 美國의 SEC에서는 要件이 될 程度로 發達되고 있다.

Ⅲ. 國際比較

美國에서는 1890年の “샤—만”法을 契機로 持株會社가 發達했다. 이런 株式所有에 依한 企業結合에 對하여 일찍부터 學者 및 會計士는 그의 經濟的 또는 營業上의 單一性(An economic or business entity)에 着眼한 것이 聯結財務諸表制度의 背景이 되었다. 그리고 그 發達을 促進한 有力한 動因은 聯邦歲入法, 證券去來委員會, “뉴—욕” 證券去來所 등이 해온 役割을 撇 수 없다.

聯邦歲入法이 1917년부터 1921년까지 關係會社集團에 對하여 聯結財務諸表의 提出을 要求한 것이 始初로 1933년에 證券法(Securities Act), 1934년에는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이 制定되고 自己의 有價證券을 州間 通商에 提供 또는 賣却하는 모든 發行會社에 對하여 聯結貸借對照表 및 聯結損益 計算書를 證券去來委員會(SEC)에 對하여 提出할 것으로 年次報告書의 一部로서 義務化하고 그의 細目은 美國 證券去來委員會規則 S-X에 맡겼다. 그러나 모

은 會社에 適用되는 會社法으로서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을 規定한 州는 하나도 없다.

英國은 證券法으로서 “런던” 株式去來所 規則 및 規程이 있으나

1. 이것에는 聯結財務諸表에 對하여 規定이 없으며,
2. 1929年의 會社法에서 처음으로 從屬會社 關係의 公開를 要求하고 있고 다시 1948年의 會社法에서 어떤 從屬會社를 聯結할 것인가 聯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3. 重要한 聯結財務諸表의 內容 및 作成節次에 對해서도 財務諸表作成의 一般原則 即,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에 關한 眞實하며 公正한 것에 關한 概觀을 주는 것 以外에 또 持株會社의 理事會가 必要로 하는 調整을 할 수 있고 또 從屬會社의 基準日과 持株會社의 基準日의 差異에 對하여 記載가 있을 뿐 詳細한 規定이 없는 등 美國과의 현저한 相違點이 있다. 또 美國에서는 公認會計士協會(AICPA), 會計學會(AAA)의 研究報告는 있으나 英國의 勅許會計士協會는 聯結財務諸表에 關한 統一의 見解는 아직 發表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聯結財務諸表의 作成節次 等에 對해서는 企業의 自主的 判斷에 맡기고 있다. 聯結財務諸表에 關한 問題點에 對해서는 會計士間에도 意見의 一致가 없다. 聯結財務諸表가 充分히 理解되지 않고 財務諸表에서 차지하는 位置가 낮은 것 등이 事實이다.

西獨에서는 1896年 去來所法이 公布된 以後 7회에 이르는 改正을 해서 現在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에는 聯結財務諸表에 關한 規定은 없다. 聯結財務諸表의 作成義務는 第二次 世界大戰 後에 新規의 鐵鋼會社에 對하여 占領法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報告書에 聯結對借對照表 및 聯結損益計算書의 添付를 要求함으로써 問題가 論하게 되었다. 또 一連의 會社도 이런 慣行에 따르게 되었다. 또 1920年代에 行한 獨逸經濟의 生産 및 販賣條件의 調査에서 發展한 經濟의 資本結合에 있어서는 父 會社만의 財務諸表로서는 本來의 目的을 떠난 不充分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證明되고 또 기타 많은 文獻도 第二次大戰 後의 株式法의 改正에 寄與했다. 西獨 株式法 草案의 理由書의 說明에도 2, 3의 說은 아직 時期를 기다릴 것을 提案하고 있으나 오늘날 “콘제른” 決算書의 作成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때가 왔다는 것에 對해서는 意見이 一致가 된다. 意見의 相違란 다만 그것이 얼마나 더 詳細하게 쓸 것인가에 對한 것 뿐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制定에 있어서는 事情을 充分히 考慮하여 注意 깊게 한발 한발 前進하여 判斷할 것이라고 한다. 特히 “콘제른” 決算書에 包含되는 企業間의 內部去來, 內部利益의 排除 等에 關한 規定中에는 여러가지를 보아 그間의 事情을 理解할 수 있다.

聯結의 範圍

父 會社가 聯結財務諸表에 包含한 從屬會社를 決定할 境遇 어떠한 範圍의 從屬會社를 聯結

할 것인가라는 점이 먼저 문제가 된다. 美國 證券去來委員會 規則 S—X에 依하면

1. 過半數 所有의 從屬會社이어야 할 것.
2. 從屬會社의 財務諸表의 計算日 또는 計算期間이 届出會社의 計算日 또는 計算期間과 다를 때는 아래 條件이 同時에 滿足되는 경우에만 聯結이 許可 된다.
 - (1) 兩者의 差異가 93日 以內 이어야 할 것.
 - (2) 從屬會社의 計算 마감일이 明示되어야 한다.
 - (3) 相異한 計算 마감일을 使用할 必要性에 對해서는 簡單한 說明을 부칠 것.
 - (4) 當該 事業年度가 變更되는 경우, 그 趣旨 및 그것에 關한 處理 方法을 明記할 것.

1.의 條件은 所謂 父 會社의 支配權(또는 統一的 指揮權)의 有無에 關한 問題이나 英國에서는 50% 以下의 持分만 保有해도 理事會의 構成을 支配하고 있는 限 聯結해야 한다고 하며 西獨에서는 50% 以下에서도 聯結하는 것이 利害關係者에게 有益하다고 判斷되는 限 當該會社를 包含해야 한다고 하는 規定이 있다. 이點 美, 英, 獨間에는 재미있는 差異가 있다.

美國 公認會計士 協會는 「會計 研究公報」 第51號에서 支配權이 一時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支配權이 過半數의 所有者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例로서, 子 會社가 法律上의 更生 또는 破産의 狀態에 있는 경우)에는 當該 子 會社의 財務諸表는 聯結할 것이 아니라는 見解를 發表하고 있다. 子 會社가 巨額의 社債 其他 負債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聯結除外의 有効한 根據는 되지 않는다. 어느 때나 美國은 株式所有의 50% 以上이라고 하는 形式 基準을 지키고 있으나 父 會社의 支配權(또는 統一的 指揮)을 株式 保有에서만 取하는 것은 結合 企業의 複雜化 및 多樣化에 따라 利益供與契約, 支配契約 等의 出現에 對하여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가 極히 疑問이다.

(1) 重要性의 原則 適用에 對하여

美國이 聯結總資產額의 85% 以上이라고 하는 金額的 基準을 設定하고 있는데 對하여 英國에서는 持株會社의 理事會가,

- 가. 經濟성과 效果
- 나. 作成의 可能性
- 다. 利害關係者의 判斷에 맡길 것인가 등을 自主的으로 判斷하여 決定토록 되어 있다. 또 西獨에서는 重要性이 없는 企業은 除外하는 것이 許可되고 어떤 會社를 “콘체른” 財務諸表에 의거 財務諸表의 公表價値가 損傷되는 경우에는 除外해야 한다고 하는 規定이 있으며 이런 判斷을 하는 것은 上位會社의 理事會다.

(2) 異種 企業의 取扱에 對하여

美國 證券去來委員會 規則 S—X에서는 原則으로 保險會社, 開業 또는 開發中の 會社의 聯結을 禁止하고 銀行에 對해서는 特則을 設定하고 있다. 또 公認會計士協會 發表의 「合併研究公報」第51號에서도 銀行 또는 保險業을 하는 子 會社에 對해서는 個別 財務諸表를 作成해야 한다는 意見을 말하고 있다. 기타의 異種業(例를 들면, 鐵道業이 遊園地, 野球場, 動物園, 不動產業, 住宅管理業務를 經營하고 있는 子 會社를 가지는 경우)의 取扱에 對해서는 어떤 規定이 없기 때문에 會計士間, 學者間의 意見도 여러가지다. 英國 會社法은 營業이 현저히 다른 單一企業으로서 聯結取扱하는 것이 合理的이 못된다고 理事會가 判斷하는 경우 省略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西獨 株式法은 特定種類의 會社(例로서 社會救濟會社 또는 異種의 營業을 經營하는 會社)에 對하여 特別한 例外 規定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會社의 收容 여부는 當該事情에 감해서 理事會의 彈力的인 措置를 바라고 있다고 解析한다.

(3) 外國從屬會社의 取扱에 對하여

S—X에서는 營業活動이 外國通貨의 制約 밑에서 行해지고 있는 在外從屬會社를 國內의 會社와 連結하는 일에 對해서는 慎重한 考慮를 要求하고 있다. 또 聯結에도 外國換去來의 制約이 財務諸表에 주어진 影響을 合理的으로 算定하여 明示할 것을 要求한다. 美國 會計學會는 外換去來의 制限 또는 政治的 經濟的 情勢의 不安定 等の 攪亂狀態가 外國에 있는 경우에는 外國從屬會社의 除外를 勸告하고 있다. 이點 西獨에서는 聯結의 範圍를 內國에 있는 會社라고 明記가 되어 있으므로 當然히 外國會社는 除外된다.

(4) 聯結의 基準日

美國에서는 聯結의 範圍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으나 美國會計士協會 「會計研究 公報」第51號에서는 會計期間이 다르다고 하는 自體는 當該 子 會社를 聯結에서 除外하기 爲한 理由는 되지 않는다고 指摘하고 있다. 聯結目的을 爲하여 父 會社의 會計期間에 對應하는(또는 近接하는) 期間의 財務諸表를 作成하는 것은 子 會社에게 比較的 容易하다고 하는 見解다. 英國에서는 原則으로 持株會社의 理事會는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 以外는 各 從屬會社의 會計年度를 自己 會計年度와 一致시켜야 한다.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理由를 註記해야 한다. 이 경우 連結되는 從屬會社의 財務諸表는 持株會社의 事業 年度前에 終了하는 것이 普通이다. 西獨에서는 原則으로 上級會社의 年度決算基準日이라 되어 있으나 明瞭性和 概觀性만 있다면, 基準日에도 作成할 수 있다고 英國만큼 強制的이 아니고 彈力的이다. 主로 季節

變動을 하는 企業임으로 歷年과는 다른 營業年度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콘제른” 決算書의 基準日을 이 企業의 決算基準日에 適合시키는 것이 좋다.

(5) 聯結會社 相互間의 債權, 債務의 消去

父 會社와 子 會社間에 생기는 債權, 債務는 當然히 消去된다. “콘제른” 決算書는 個別 決算書를 綜合함으로서 單純한 合算의 方法이 아니고 “콘제른” 內部的 關係의 徹底한 排除下에서 綜合함으로서 깨끗한 財務諸表를 作成하고 “콘제른” 企業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表示하는데 그치지 않고 個別企業의 判斷을 爲하여 價値있는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改正 西獨 株式法 草案의 理由書). 美國에서는 消去하지 않으면 그 理由 및 그 處理의 方法을 記載하도록 되어 있다. 決算日의 差異에 依해서 發生한 債權, 債務의 差額은 聯結貸借對照表上 移延 計定으로 表示하게 된다. 會社間의 債權, 債務의 除去를 確認의 意味로서 註記한 會社가 많으나, 實務上 慣行이 充分히 育成됨으로서 이와 같은 註記는 없게 된다.

(6) 內部 去來 및 內部利益의 除去

聯結財務務表에 包含되는 會社間의 去來, 例로서 賣出額, 買入額, 受入利子, 支給利子 等은 當然히 相殺消去 한다. 內部 去來에서 생기는 利益의 除去가 問題가 되는 것은 主로 期末 在庫資産 및 固定資産에 對한 것이다. 美國은 內部 利益의 排除에 關해서 매우 嚴格하나 西獨에서는 草案理由書에서 본바와 같이 內部 利益 除去의 原則論을 提示하였으나 그 除去의 技術的, 實務的 困難性을 充分히 考慮하여 內部利益의 除去를 어느 程度까지 放棄할 수 있는가가 問題다. 加工 또는 製造하지 않고 또는 加工 또는 製造後에 再讓渡를 豫定하지 않는 경우와 通常供給 및 給付의 去來範圍內에서 行해지는 경우에는 內部 利益의 除去를 必要로 하지 않은 明文 規定이 있다. 固定資産의 賣却益(例로서, 어느 “콘제른” 企業에 依하여 製作된 機械를 다른 “콘제른” 企業에서 使用하기 爲하여 賣却한 境遇의 利益)의 取扱에 對하여 西獨 株式法 草案理由書에서는 專門家의 判斷에 依한 固定資産으로부터의 內部 利益의 除去가 特別히 큰 實務上의 困難에 聯結되고 內部 利益에 占有되는 比率이 그만큼 크지 않을때는 內部 利益除去 原則의 例外로서 認定된다. 英美에서는 西獨과 같이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重要性의 原則에 따라 少額의 固定資産에 對해서는 內部 利益의 除去를 하지 않는 것이 實情이다. 改正 西獨 株式法은 內部去來額 對替의 困難性을 考慮하여 對替가 行해지지 않는 경우를 爲하여 內部 賣出額을 外部 賣出과 區別하여 表示하는 것을 認定한다. 그러나 內部 賣出額의 差 또는 對替을 스스로 準備하고 있는 企業을 爲하여 현저히 簡素한 “콘제른” 損益計算書의 方式을 選擇적으로 認定하고 있다.

(7) 少數株主持分

連結된 從屬會社의 純資産額에 對한 少數株主持分을 聯結財務諸表에 어떻게 取扱하는가가 問題다. S—X에서는 資本金 및 剩餘金에 對하여 少數株主持分을 區別하여 記載하고 다시 少數株主持分에 關하여 發生한 損益의 總額은 連結損益計算書에도 區分表示해야 한다. 西獨株式法에서는 第三者 持分은 資本에 對한 準備金 및 利益에 對한 金額이며 「第三者持分調整計定」으로 區分 表示해야 한다. 또 利益에 對應하는 額은 區別하여 記載해야 한다. 이 限度에서는 美 西獨間에는 大差가 없다. 少數株主持分의 表示는 大別하여 3個의 方法이 있다.

가. 負債로서 表示하는 方法

나. 中間的 項目으로 表示하는 方法

다. 株主持分으로 表示하는 方法 등이 있다.

通說로는 株主持分으로 表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AICPA의 調査에 依하면 調査對象會社 85社中 가. 가 23社 나. 가 56社, 다. 가 3社, 其他 3社다. 西獨에서는 中間項目으로 表示 하는 것이 壓倒的으로 많고 “시—맨스” “새링”社에서는 連結剩餘金 다음 充當金の 앞에 第3者 持分項目을 設置한다. Associated British Foods Limited의 경우에는 株主持分으로서 利益剩餘金の 다음에 科目을 設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區分表示가 여러가지인 것은 少數株主持分의 性格에 對한 見解에 定設이 없기 때문이다.

(8) 連結營業權 또는 連結調整計定

이것은 連結財務諸表에 包含되는 從屬會社의 自己資本에 對한 父 會社의 持分과 資本參加의 帳簿價格의 相殺消去의 問題다. 美國에서는 取得時點에서 連結調整計定을 算出하는 것이 通說이다.

AICPA 「會計研究公報」 第51號에서는 連結調整計定은 原則으로 取得時點에서 認識하고 借邊差額은 그 性質에 따라서 處理해야 한다. 또 當該差額은 그것이 固定資産 및 特許權과 같이 無形 固定資産에 그 合理的인 範圍에서 分配하고 分配하지 않은 差額은 連結貸借對照表上 그 性質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個를 資産의 部에 表示해야 한다. 反對로 貸邊殘額이 생겼을 때는 特定の 資産에 歸屬되는 合理的인 範圍까지 資産에 配分해야 한다. 그後 差額은 將來 어느 期間에 利益에 算入된다. 資本剩餘金에 貸記 하는 것은 現在는 認定하지 않는다.

連結營業權은 從屬會社財産의 過大 또는 過少評價, 從屬會社의 收益力 期待의 大小에 의하여 從屬會社의 純資産額을 上廻 또는 下廻하는 父 會社 投資가 되어 있는 것과 單純히 父 會社의 資本參加가 過大 또는 過少 評價되어 있는 것 등의 混合物로서의 性格을 갖는다. 西獨

株式法은 積極, 消極, 營業權間의 相殺消去를 認定하고 하나의 項目에 總括하는 것을 許可하고 있으나 이 項目을 爲하여 一定한 名稱을 規定할 것을 放棄하고 있다. 이點 “콘제른” 決算 檢査役은 잘못된 名稱을 쓰지 않도록 이 項目의 貸借對照表의 性格에 가장 適合한 名稱이 選擇 될 수 있도록 監視한다. 그러나 注目할 點은 營業權의 混合的인 一體性 및 相殺消去를 認定 하면서 그 項目의 原因과 貸借對照表上의 性格에 對하여 “콘제른” 營業報告書上 그 說明을 要求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株式取得時點에서 計上하고 借邊營業權은 資本剩餘金과 相殺消去하여 貸邊營業權을 資本剩餘金에 包含하는 會社가 壓倒的으로 많다. 이것은 前述의 AICPA의 意見과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9) 聯結剩餘金

支配獲得後에 생긴 父 會社의 持分의 增加(또는 減少)는 聯結剩餘金으로서 表示하도록 되어 있다. AICPA 「會計研究公報」 第51號에서는 父 會社가 取得한 날에 있어서 從屬會社의 利益剩餘金 또는 缺損金은 聯結剩餘金에 算入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聯結調整計定과 別途計上할 것을 明記하고 있다. 西獨 株式法에서도 “콘제른” 利益(또는 “콘제른” 損失)의 區分을 義務化하고 있다. 聯結剩餘金을 計上하지 않는 例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聯結營業權을 聯結剩餘金에 負擔 시키는 會社는 매우 많다.

(10) 聯結財務諸表의 作成日

美國에서는 證券去來法에 依하여 屆出會社의 決算日後 120日 以內, 英國 會社法은 特別한 理由가 없는 限 9個月 以內(外國에서 業務를 하고 있거나 또는 外國의 利害關係를 가지는 會社의 境遇에는 12個月 以內), 西獨 株式法은 5個月 以內로 定하고 있다. 聯結財務諸表의 作成日은

- 가. 確定된 監査를 받은 個別財務諸表를 基礎로 하는 데는 實務的 困難性이 있고
- 나. 父 會社의 統一的 指揮力
- 다. 子 會社의 計算日
- 라. 經營管理를 爲한 有効性 等の 妥協的 調和가 끝난 뒤의 結果가 되겠으나 英國의 9個月은 너무 긴 것 같다. 英國 會社法에서는 聯結財務諸表의 作成手續 科目表示를 一切 省略하고 있고 勅許會計士協會도 聯結財務諸表에 關한 統一的 見解를 避하고 있는 事情을 考慮할 때 英國에서는 聯結財務諸表가 制度로서 充分히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다.⁽⁹⁾

(9) 窪內義正, 諸外國의 聯結財務諸表規則と連結財務諸表의 實例について, 企業合計 18-9.

IV. 聯結納稅 申告制度

投資家와 債權者 때문에 聯結財務諸表의 存在 價値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點에 證券去來法이 聯結財務諸表制度를 導入하는데 積極的인 姿勢를 取하는 理由가 있다. 證券去來法이 聯結財務諸表制度를 採用하여, 上場會社에 이 制度를 強制했을 때, 法人稅法과 商法이 가만히 앉아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法人稅法은 그 때는 美國의 聯結納稅申告制度를 研究하고 商法은 英國 會社法과 獨逸株式會社法의 規定을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事實, 實務界가 聯結財務諸表制度의 導入을 바라고 있는 것은 稅制面의 效果일 것이다.

稅 效 果

우리나라 企業이 무거운 稅負擔에 苦痛을 받고 있는 것은 事實일 것이다. 稅務會計에 對한 關心이 企業會計 보다 더 크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證明한다. 따라서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는데 手酷가 들어도 稅制上의 減稅效果가 있으면 企業은 手酷를 手酷로 보지 않을 것이다. 聯結財務諸表制度의 導入은 本來 稅務上의 考慮를 充分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企業實務는 이 制度를 쉽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聯結納稅申告制度가 導入될지 그 境遇에 問題가 되는 여러가지 問題를 한번 생각해 본다.

聯結納稅 申告制度의 前提條件

1. 聯結財務諸表制度를 導入하는 것은, 現段階에서는 아마 時期尙早라고 볼 수 있다. 또 聯結財務諸表作成上의 具體的 節次에 關한 解明이 아직 充分히 되어 있지 않다. 더우기 實務에서 이것을 作成한 經驗도 不足한 實情일 것이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制度를 將次 導入하는 것은 明白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制度導入의 必要가 認定되는 境遇에는 「企業會計原則」 「商法」 「法人稅法」 「證券去來法」 등의 關連法規 등을 整理해야 할 것이며 企業會計의 負擔을 過重히 하지 않도록 慎重한 配慮가 必要하다.
2. 聯結財務諸表制度는 聯結納稅申告를 許容하는 것이 않으면 企業實務上 實効가 없으므로 法人稅法의 改正을 必要로 하나, 이 境遇 聯結納稅申告를 強制로 할 것이 아니고, 企業에 繼續性의 原則을 前提로 하여 選擇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必要한 境遇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는 繼續性의 原則을 強制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明確히 해야한다.
3. 聯結納稅申告制度의 導入에 있어서는 年一回 決算의 慣行을 하도록 하는 것이 必須前提다. 또 商法은 中間配當制度를 設定하며, 決算書類의 確定은 株主總會의 承認事項이 아

니고, 理事會에 權限을 委任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聯結納稅申告를 承認하는 境遇, 法人稅率 以外에 如何한 形態의 法人稅附加稅도 負課하지 아니하며, 當分間은 制度의 圓滑한 發展을 期하기 爲해서 例를 들면 準備金, 充當金 등의 轉入額, 交際費, 寄付金 등의 損金 承認限度額의 引上等 綠色申告制度에서 承認된 特典에 對하여 不利하지 않도록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5. 聯結納稅制度導入을 爲한 稅制의 簡素化가 強力히 必要할 것이다.

聯結의 範圍

聯結納稅申告制度에 있어서 聯結의 範圍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問題다. 聯結財務諸表에 表示된 利益을 基礎로 하여 課稅所得을 計算하는 것이 가장 簡便하며 過半數의 株式을 實質의 所有하는 境遇를 聯結의 範圍로 하는 것이 聯結納稅申告에서도 認定할 것이다. 그러나 當分間은 聯結納稅申告를 前提로 하는 聯結財務諸表制度의 導入을 爲하여 100% 所有의 從屬會社를 連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聯結財務諸表作成의 慣行이 바로 確立되지 않고 또 稅法上 單一組織體 概念을 받아 드리는데 가장 理解하기 쉽다. 聯結의 範圍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에 對해서는 그 範圍內容, 連結의 時期 등의 事例를 더욱 詳細하게 表示할 必要가 있다.

會計期間

支配會社의 會計期間에 從屬會社의 會計期間을 原則적으로 一致 시키는 것은 聯結納稅申告制度의 面에서 보아 妥當하나 兩者가 合致하지 않을 때는 假決算을 하게 하는 方法에 依하여 調整을 하거나 또는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決算日의 差異가 多少 있어도 假計定을 두고 差額의 調整을 하고 聯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聯結納稅申告는 年一回로 하고 中間納稅를 認定하는 方途를 考慮할 것임. 이 點으로 보아 年一回의 決算制度의 樹立은 必要하다. (10)

聯結會計處理 原則

支配會社 및 從屬會社가 採用하는 會計處理의 原則 및 手續은 聯結財務諸表作成의 目的上 原則으로 꼭 같을 必要가 없다. 그러나 會社相互間去來, 會社間債權, 債務關係 등에 關한 會計處理가 各會社間에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는데 아주 困難이 생기므로 이들 處理를 統一시키는 것이 必要한 것은 當然하다.

聯結貸借對照表作成의 基準

支配會社의 投資計定을 從屬會社의 資本計定과 消去하는 데는 簡便性的 見地에서 期末에 —

(10) 1970, Federal Tax Course, Prentice-Hall, 1970. p. 2712.

括消去하는 方式을 認定할 것이며, 이것이 納稅申告制度에서도 採用되는 것이 좋다. 더우기 이 경우의 期末一括消去 方法은 支配會社의 從屬會社에 對한 支配權成立後에도 適用함이 좋다.

聯結調整計定の 借邊差額은 原則으로 分析하는 것이 좋고 그 原因에 따라서 資産計定에 配分할 것이며 聯結納稅申告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것을 營業權에 類似한 것으로 認定하고 短期間에 (例로서 商法의 5年 償却에 準해서) 償却할 것을 會計原則上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聯結調整計定の 貸邊差額에 對해서는 原則으로 分析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래서 資本剩餘金 및 利益剩餘金으로 되는 部分은 各各 區分하여 表示할 것이다. 이 境遇 利益剩餘金으로 생긴 貸邊差額에는 課稅필의 利益剩餘金과 從屬會社의 그 年度의 經營活動에서 생긴 利益이 混在하고 있으므로 兩者를 分離한다. 다만 聯結納稅申告에서는 計算의 便宜上 差額을 資産計定の 控除項目으로 處理하는 것을 認定할 것이다. 이것은 普通差額의 性質을 가지며 減價償却充當金 等の 評價性充當金이므로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聯結調整計定에 對해서는 借邊, 貸邊의 相殺殘額을 償却하는 方法은 檢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少數株主持分

少數株主持分은 資本項目인가 負債項目인가에 따라 聯結納稅申告制度의 實施에 따라 影響이 있다고 생각됨으로 이 點을 明示해야 한다.

聯結損益計算書作成의 基準

1. 會社間 去來에 있어서 그것이 實質적으로 支配會社와 從屬會社와의 會社間去來인 것이 分明함에도 不拘하고 兩會社間에 다른 會社가 介在하고 있는 境遇가 있다. 이때는 介在하고 있는 會社에 對한 債權, 債務를 그대로 두고 內部利益만을 除去하는 方式을 認定할 것임.
2. 會社間 去來에 있어서 內部利益은 原則으로 除去할 것이나,
 - (1) 減價償却資産中에 包含된 內部利益은 除去하지 아니해도 좋은 方法
 - (2) 內部利益을 賣買時에 除去하고 減價償却費의 計上은 賣買價格에 依據 計算聯結하고, 除去한 內部利益을 資産의 除去 또는 外部에 賣却時에 利益으로 計上하는 方法,
 - (3) 減價償却費의 計算은 그대로 두고 資産의 耐用年數에 따라서 內部利益을 計上하는 方法을 註解에 보이고 이中 어느 方法을 選擇할 것을 明示할 것.
3. 支配會社와 從屬會社의 去來에 있어서 同族會社의 行爲計算否認規定은 適用하지 않을 것을 明白히 할 것.
4. 會社間 去來에 있어서 資産의 評價基準은 帳簿價格을 取하고 時價를 適用하지 않을 것

등을 明白히 할 것. 다만, 資産을 讓受한 會社에서 正當한 理由가 있다면, 受入資産에 對한 評價減을 計上할 수 있다는 趣旨를 明示한다.

綜合財務諸表

聯結의 範圍에서 除外된 從屬會社에 對한 綜合財務諸表를 作成 시키는 것은 企業에게는 過重함으로 이것을 削除할 것임.

稅制改正과 聯結財務諸表制度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한다는 것은 企業實務上 相當히 귀찮은 手續을 必要로 하는 것은 事實이다. 企業集團內의 債務, 債權의 消去, 內部利益(企業集團間에 生기는)의 除去 등 單獨財務諸表를 作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事務量이 發生한다. 企業數가 많으면 關係證빙서류의 檢討量도 많아진다. 法人關係의 稅務關係官으로부터 要求하는 것을 다 한다면 企業은 더욱 더 事務作業의 煩雜이 생긴다. 例를 內部利益의 除去에서 드러보자. 父 會社가 子 會社에 對하여 製品을 販賣한다고 하자. 送狀寫本과 其他의 書類는 父 會社가 保管하고 있다. 單獨의 納稅申告를 한다면 이들 書類는 販賣의 事實을 보여주는 證빙으로도 利用되고 그리고 또 稅務調查에서도 數量, 金額 등의 確認 대조가 된다. 그러나 聯結納稅申告制度에서는 다르다. 子 會社側에서 父 會社로부터 買入된 製品이 完全히 賣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殘留된 在庫資産에 對한 內部利益이 除去되어 聯結財務諸表面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父 會社에서는 그러한 內部利益의 追跡調査를 送狀寫本 其他의 書類에 遡及해야 한다. 이 點은 稅務調查에서도 꼭 같다. 內部利益의 除去를 企業이 行한 것을 그대로 認定한다면 決算操作도 있을지 모르며 稅務面에서의 調査는 더욱 緻密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은 徵稅當局에도 새로운 稅務調査의 技術이 또 必要하다. 이것은 單純한 例에 不過하다. 聯結財務諸表가 갖이는 會計學의 手法을 그릇없이 理解하고 이것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企業에서 實踐된 것인가를 檢問한다는 것은 稅務調査上 매우 高度한 技術을 必要로 할 것이다.

聯結財務諸表를 稅制面에 導入하는 데는 稅制의 大幅的인 簡素化와 整理가 必要하다. 特히 租稅特別措置法의 改訂에 依한 特別措置의 增大를 비롯하여 調査事項이 增加하는 狀態에서는 더욱 聯結稅務申告面에서의 煩雜을 招來케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會計處理의 妥當性의 判斷을 稅務當局에 求한다고 하는 것보다 會計專門家인 公認會計士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聯結財務諸表 制度의 圓滑한 稅制面에의 導入도 會計專門家の 協力 없이는 안 된다.

外國의 例

聯結納稅申告制度가 가장 빨리 採用된 것은 美國의 合同所得稅申告書의 制度다. 이 美國의 合同申告書制度는 當初는 100% 保有의 從屬會社에 對하여 強制하였으나 創設當時의 政府의 意圖는 第一次大戰에 있어서 租稅의 增收에 따라 直接的인 稅額의 增減보다도 脫稅防止의 措置에 두었다. 그後 1921년에 合同申告書의 提出의 選擇是認, 1924년에 從屬會社 保有比率의 95% 引下, 1932년에 高稅率의 適用, 1934년에 廢止, 1942년에 復活과 2%의 附加稅의 重課, 1954년에 從屬會社의 保有比率의 80% 引下, 1964년에 附加稅의 2% 重課稅의 廢止 等 曲折 變遷을 거쳐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美國에 있어서의 合同申告制度의 租稅負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서는 現段階에서는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理解하고 있다. 卽 合同申告書를 提出하는 主要한 利益은

1. 어느 會社의 營業損失과 다른 會社의 利益과의 相殺
2. 會社間去來實施의 課稅利得에의 除外
3. 加入會社의 消滅에 依한 課稅의 回避
4. 全課稅目的에 關한 團體의 代理人으로서의 父 會社

加盟會社의 하나 또는 그 以上 이 課稅年度에 營業損失이 있는 경우 合同申告書를 提出하는 利益은 明確하며, 그 損失은 良好한 加盟會社의 營業利益과 相殺된다. 또 그 위에 加盟會社로부터의 配當은 排除됨으로 個別申告書에 나타나는 純營業損失을 增加시킨다.

위와 같은 利益이 있는 反面, 不利益한 點은

1. 合同申告書를 提出할 것을 選擇한 年度의 그 後의 申告書에 미치는 效果
2. 1964년까지는 附加稅의 2% 重課가 負課되다.
3. 個別申告書에 있어서는 各構成員은 各各 25,000弗의 附加稅控除를 認定하나 合同申告書에서는 全加盟團體가 單一의 25,000弗 控除를 認定 받는다.
4. 모든 加盟者는 合同申告書에 Joint해야 한다.
5. 合同申告書에 關한 財務部 規則에는 모든 加盟者가 따라야 한다.
6. 合同申告書에 包含될 加盟者의 計算上의 過誤에 對해서는 政府에 의거 그 缺陷이 發見되었을 時는 그 缺陷이 最終적으로 解決될 때까지는 時效期間이 모든 申告에 關한 全條項과 모든 加盟者에 對하여 一時 停止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美國 內國歲入法을 例를 들어 聯結會社의 範圍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株式의 80% 以上 所有를 合同申告를 하는 加盟團體의 要件으로 한다. 여기에 加盟團體란 包含될 法人인 共通會社와 株式所有를 通하여 結合하는 하나 또는 둘 以上이 包含해야 하는 法人의 連鎖를

말한다.

포함될 法人(단, 父 會社는 除外하고)의 모든 種類의 議決權의 80% 以上 및 포함해야 할 法人의 各各의 議決權 없는 各種株式의 80% 以上이 直接으로 다른 포함해야 할 法人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의하여 所有되고 또는 共通 父 會社가 다른 포함되어야 할 法人의 최저 한 法人의 모든 種類의 株式의 80% 以上 및 各種의 議決權 없는 株式의 80% 以上을 直接所有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株式이란 配當을 制限한 議決權 없는 株式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美國 證券去來委員會規則(S-X)에는 포함할 從屬會社의 範圍를 過半數所有를 要件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稅法의 合同申告範圍와는 一致하지 않는다. 더우기 이 合同申告의 加盟團體要件은 當初 100%, 95%, 80%이라고 하는 段階的 變遷을 거쳐 現在에 이르고 있다. (11)

V. 聯結財務諸表와 商法

聯結財務諸表制度가 企業會計 原則에 導入된 以上 商法에 依한 採用의 問題도 考慮해 봐야 할 것이다. 聯結財務諸表制度를 商法이 採用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必要한 措置는 當然히 取해야 할 것이다. 決算日로부터 定期總會開催日까지의 期間의 延長, 一年決算의 採用을 容易케 하는 措置를 取하는 것 등 具體的 方案을 檢討해야 된다고 生覺한다. 聯結制度를 商法上의 制度로서 採用한다는 것은 定期總會에 提出할 計算書類에 聯結貸借對照表 및 聯結損益計算書를 첨부하는 것을 意味한다. 또 聯結制度의 採用에 依據 決算期로부터 定期總會까지 그 期間이 現在보다 長期를 要한다고 生覺하기 때문에 그 期間의 延長이 要望된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商法은 決算期로부터 定期總會의 會議日까지의 期間限定여부 即 例를 들면, 3月末을 決算期로 하는 會社가 6月末日에 定期總會를 開催하는 것이 商法上 許可 여부가 問題다. 이 問題는 法人稅의 申告期限과도 關連이 있다. 다음에 一年決算을 쉽게하는 措置로서 中間配當을 可能케 하라는 意見은 聯結制度採用의 有無와는 關係없이 提唱되고 있으나 聯結制度採用을 爲한 必要한 措置의 例로서 들고 있는 것은 聯結制度의 採用을 爲해서는 一年決算의 普及이 보다 必要하다는 생각이 든다. 企業의 財政狀態를 보다 더 明瞭하게 表示하기 爲한 聯結制度를 一年決算과 結付시킨다는 것은 좀 奇異한 感이 있으나 이것은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에 依한 企業의 負擔을 輕減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12)

商法上의 制度로서 半年決算의 會社에도 聯結財務諸表는 一年에 一回 定期總會에 提出하면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制度를 取하면 前期에 한 配當의 表示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問題는 생기나 이것은 解決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一年決算을 強制할 수 없

(11) Internal Revenue Code, Commerce Clearing House Inc. 1971, Sec. 1501~1564.

(12) Len Young Smith and G.Gale Roberson, Business Law, West Publishing Co, 1962 pp. 918~920.

는 以上 恒常 發生한다. 亦是 基本問題는 中間配當의 是非이며 聯結制度의 採用과는 關係없이 論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商法이 聯結財務諸表의 制度를 採用하는 境遇에는 聯結財務諸表의 作成方法 및 基準에 對하여 規定할 것이다.

이 外도 商法이 聯結財務諸表制度를 採用하는 境遇에 問題가 되는 것은 聯結剩餘金을 父會社의 配當制限에 關係시키느냐 안시키느냐가 問題다. 勿論 支配從屬의 關係는 있어도 各會社가 獨立의 法人인 以上 配當可能利益의 算定에 對해서는 個別財務諸表上의 利益을 基本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支配從屬關係가 있는 會社는 經濟的으로 同一體이며 때로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의 희생에서 利益을 捻出하는 일이 있는 것을 考慮하면 即 支配會社의 配當을 爲해서는 個別貸借對照表上 利益의 存在 뿐만 아니라 聯結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의 存在가 必要하며 이들 兩利益이 접치는 範圍內에서만 配當을 認定한다는 制度는 生覺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聯結의 制度를 配當可能利益에 關係시킬 때는 그렇지 않은 境遇에 比하여 聯結의 基準 및 方法에 對한 規定은 더 詳細하게 할 必要가 있다. 聯結財務諸表制度의 採用에서 다음에 問題가 되는 것은 監査問題다. 監査制度가 不充分한 狀態에서 聯結의 制度를 採用해도 그것은 그림의 떡에 不遇할 것이다. 다시 聯結制度에 特殊한 것은 監査問題로서 從屬會社에 對한 支配會社의 監査役의 調査權의 問題가 있는 것도 指摘할 必要가 있다.

VI. 日本 聯結財務諸表의 實態

특히 日本企業에 있어서 特徵이 되는 것은 SEC規則에 따라서 作成되는 것과 內部資料 때문에 作成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사이에는 分明히 差異가 있다.

첫째, 聯結方針의 實態를 中心으로 생각해 보면 SEC規則의 適用을 받아서 50%를 넘는 持株의 子會社만을 連結하는 方針이 支配的이며 그러나 若干의 例外도 있다. 그것은 業種이 현저히 다른 것과 너무 弱少한 子會社를 除外하는 것과 決算期의 差가 3個月以上의 子會社는 除外하고 在外 現地法人은 100% 持株以外의 會社는 除外한다. 그러나 決算期의 差가 있는 것은 聯結方式을 取하는데 앞서 子會社의 決算期를 父會社의 그것에 調整하여 一致시키거나 또는 子會社의 決算期를 父會社의 그것보다 一個月 빠르게 해서 連結決算의 圓滑을 期한 例는 더러 있다. 그리고 聯結方式이 年1회의 것이 壓倒的으로 많다. 이것은 美國에서 볼 수 있는 年1회 決算制度에 對應하는 것이다.

內部管理資料 및 集團全體의 業績把握을 爲하여 聯結하고 있는 會社의 聯結方針의 特徵은 여러가지다. 聯結基準으로서는 過半數持株의 子會社를 連結하는 것이 支配的이다. 또는 重

要會社에 限해서는 事業經營上 密接한 關係가 있는 會社를 包含하든가 關係會社를 全部 聯結 하든가 하는 境遇도 있다. 또 內部에서 作成되는 것은 決算期의 差異를 重視하지 않고 子 會社의 月次決算 即 假決算의 數値를 聯結하고 있는 會社가 相當數 있다. 또 어떤 會社는 聯結 方式을 取하는데 앞서 子 會社의 決算期를 父 會社의 그것에 一致시킨 會社도 若干 있다. (13)

또 內部에서 作成되고 있는 것은 年二回 連結되고 있는 會社가 많다. 이것은 數値把握의 迅速性を 要求한다고 하는 管理目的의 要請에 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子 會社의 月次決算의 數値와 聯結하는 方法은 管理目的으로서는 在庫의 確定, 費用의 確定 等に 問題가 있고 可能한 限 父子 會社間의 決算期는 一致시키고 있다.

둘째, 父 會社의 投資計定과 子 會社의 持分額과의 調整에 關한 會計處理 問題다. 이 調整은 本來, 父 會社의 子 會社 支配獲得時의 株式取得額 即 그 時點에서의 子 會社의 株價와 持分額과의 調整에 對한 問題다. 그러므로 株價와 持分額과의 不一致 原因에 是 根據가 있다는 것이며 그런 뜻에서 調整方法은 복잡하다. 더우기 子 會社支配의 獲得時期가 年度의 途中일 때는 그 期初, 期中, 期末의 어느 時點의 持分額에 調整하는 가에 따라서 株價와 持分額과의 사이에 不一致가 生길뿐 아니라 그 年度의 損益도 介在하게 되고 그만큼 複雜한 會計處理가 된다.

日本의 前記의 實態에 依하면 投資計定이 클때 即 借邊差額에 對하여 「營業權으로 한다」(6社), 「聯結營業權으로 한다」(9社), 「利益 剩餘金에 Charge 한다」(10社), 「資本計定 總額에서 控除 한다」(2社), 「損失로 한다」(7社), 「聯結 差額으로 한다」(3社), 「其他」(8社)이다. 또 貸邊差額에 對해서는 「資本剩餘金으로 한다」(5社), 「連結剩餘金으로 한다」(4社), 「連結差額으로 한다」(3社), 「營業權과 相殺하여 差額을 連結剩餘金으로 한다」(7社), 「其他」(6社)다.

이 實態에 依하면 極히 여러가지 方式이 取해진다. 實際問題로서 日本의 巨大企業에 있어서 子 會社는 父 會社의 全株引受에 依하여 新規設立에 依據 生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實務家의 注意를 끌지 않는 것 같다. 다만 營業中의 會社의 株式를 市場에서 取得하여 子 會社로한 會社에서는 그 處理에 매우 고통을 當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어느 會社는 聯結表上의 調整이나 聯結着額의 原因이 子 會社의 固定資産이 많기 때문에 높은 株價에 基因해 있을 때는 子 會社의 固定資産의 評價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子 會社 株式取得時의 差額調整의 方式은 極히 많으나 比交的 純化된 方式을 取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느 會社는 差額의 原因을 追求하여 調整하고 또 어느 會社는 그 差額을 精算表에서 일단 營業權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을 聯結諸表上에서는 「其他經費」에 包含시켜 資産化 하지 않는 方法도 있다. (14)

(13) A.I.C.P.A.; Accounting Reserch Bulletine, No. 51, July 1959.

(14) 稻垣富士男, 聯結財務諸表論. 中央經濟社, pp. 53—56.

셋째. 少數株主持分の 表示問題

이 少數株主持分の 表示個所 및 表示內容에 對한 實態도 여러가지다. 먼저 表示個所를 보면 「株主持分の 部에 表示하는 것」(9社), 「負債와 資本과의 中間에 表示하는 것」(16社), 「負債의 部에 表示하는 것」(3社), 「其他」(7社)가 있다. 其他의 大部分은 全株保有를 爲하여 少數株主持分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으나 一社만 資本金에 包含시켜 表示한다고 했다.

다음에 表示內容에 對해서 보면 「一括 表示 하는 것」(22社), 「資本金 剩餘金으로 各各 別途로 表示하는 것」(12社), 「一括 하여 註記로서 內容을 表示하는 것」(4社), 「기타」(7社)로 되어 있다. 前記의 表示個所와 表示內容과의 關聯을 보며는, 負債로서 表示하는 것과, 負債와 資本과의 中間에 表示하는 것은 主로 一括表示方法을 取하고, 株主持分에 表示하는 것은 主로 資本金과 剩餘金과의 各各이 別途로 表示하는 方法을 取하고 있어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또 SEC要求方式과 內部管理資料로서 作成하고 있는 境遇에는 좋은 對照方法을 取하고 있다. 前者에서는 負債와 資本과의 中間에 一括하여 少數株主持分을 表示하는 것이 많고 後者에서는 株主持分에 資本金, 剩餘金別로 表示하던지 資本의 部에 一括하여 表示하는 일이 많다. 前者는 美國의 慣行을 重視하고 父 會社의 支配的 株主의 立場을 尊重하고 있는 것이고 後者는 集團企業 全體의 一體性을 尊重하고 있는 것 같다.⁽¹⁵⁾

넷째. 內部利益除去의 會計方式.

內部利益으로서는 在庫資產의 對替利益과 固定資產의 讓渡益이 典型的 例다. 먼저 在庫資產의 內部利益을 控除하는 會社가 많다. 即 22社 있으며 控除하지 않은 會社는 17社, 기타 4社라고 한다. 또 固定資產의 讓渡益에 對하여 除去하는 會社가 19社, 除去하지 않은 會社가 19社, 기타 6社다. 여기에 外部에 公表하는 것과 內部管理資料로서 作成하는 사이에는 對照的 差가 있다. 外部公表의 경우에 內部利益을 控除하지 않은 會社는 一社도 없고 全部 控除한다. 固定資產의 讓渡益에 對한 減價償却額은 實現한 것으로서 內部利益에서 控除하는 會社가 많다. 이것에 對하여 內部管理資料로서 作成은 하고 있으나 內部利益을 控除하지 않은 會社가 相當數가 있다. 그 理由는 事務의 複雜 및 金額의 重要性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公表財務諸表로서 聯結財務者를 作成할 때는 金額이 小額인 경우를 除하고 內部利益은 控除하고 있다.

또 內部利益의 控除에 있어서 小數外部株主持分을 尊重하는가의 課題가 있다. 이것은 在庫資產의 對替利益에 對하여 外部株主持分을 尊重한다고 하는 會社는 둘이다. 이 事實은 內部對替利益의 控除에 있어서 外部株主持分을 고려치 않는 會計處理가 一般的 會社慣行이란 것

(15) 稻垣富士男, 前掲書, p. 104.

을 말하고 있다.

其他의 會計處理로서 收益, 費用, 項目의 除去, 重世代株式의 保有 및 相互株式保有의 會計處理, 聯結財務諸表의 脚註事項, 綜合計算書의 問類가 있다. 外部報告 때문에 作成되는 경우에는 主로 SEC規則에 準據하여 一部는 事情을 檢査하는데 그치고, 內部管理資料의 경우에는 公表하는 것이 아니므로 脚註 等은 別로 重要視되고 있지 않는 것이 實情이다. (16)

VII. 韓國 聯結財務諸表의 實態

會計法規의 製定에 關連하여 世上 사람들은 말하기를 先進國에서는 會計實務가 先行하고 一般的인 會計慣行이 形成된 뒤에 法規가 그것을 뒤따라가고 이것에 反하여 後進國에서는 法規가 先行하고 會計實務가 그것에 追從하는 길을 擇한다.

우리 나라의 商法은 아직도 聯結財務諸表 및 集團會計의 作成을 要求하고 있지 않고 稅法에서도 聯結申告制度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더욱기 時勢에 敏感한 證券去來法에 關連하는 法規에서도 아직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을 要求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巨大會社의 會計擔當者, 또는 集團企業의 社長會議 및 經營責任者會議의 提出用으로서 또는 最高幹部가 集團企業 全體로서의 收益性 및 財定狀態를 보기 爲해서 또는 集團企業全體에서의 資金計劃 및 販賣計劃의 樹立을 爲하여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은 必要할 것이다. 또 銀行當局은 貸付處인 集團企業의 支配會社의 支拂能力을 보기 爲하여 聯結貸借對照表의 提示를 要求할 것이다. 또 公認會計士 特히 在韓 美國 公認會計士가 聯結財務諸表를 보지 않고 監査報告書를 마음 놓고 作成할 수 있는가 하는 批判의 問題도 있고 또 粉飾會計의 温床이 되는 이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을 着眼하여 自主的이나마 聯結財務諸表 作成의 必要性을 呼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의 要請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巨大會社에 있어서의 貸借對照表의 總資產에 占有하는 投資計定金額의 增大化 傾向은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을 要望하는 基本的 要因이라 할 수 있다. 아래 表는 最近 數年

〈表 1〉

年 度	會 社 數	投資對總資 產 100分率
1971	31	3.2%
1972	31	4.2%
1973	31	5.4%

資料 : Kist分析(三寶證券提供)

間에 있어서 巨大會社의 投資計定の 推移를 보인다. 이것을 概觀하면 資本金이 10억을 넘는 約 31個 會社의 總資產에 對한 投資額은 增加하고 있고 만췌내 73년에는 總資產額의 約 5%에 이르고 있다. 投資計定은 반드시 子 會社의 投資額만 內包하는 것은 아니나 大部分은 子 會社의 投資를 表示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重要性의 增大도 指摘할 수 있다. 그

(16) 稻垣富士男, 前掲書, p. 141.

러나 이것을 聯結財務諸表制度를 導入하는데 있어서 先進諸國의 實態와 比較해 보면 아직은 時期尙早라고 볼 수 있다.

現在 韓國에 있는 巨大企業中 聯結의 客觀的 範圍인 한 會社가 他會社의 議決權있는 株式을 直接 또는 間接으로 51% 以上 實際所有하는 境遇에 該當하는 會社의 數도 적다. 그러나 如何한 方法으로서든

直接的이던 間接的이던 實際支配統制를 行使하고 있는 企業에 對해서 聯結의 範圍를 좁혀서 結合財務諸表를 作成하는 境遇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表 2〉

國 名	年 度	會 社 數	投資對總資 產 百分率
日 本	1966	632	10.3%
美 國	1956	293	7.0%
英 國	1964	681	12.9%
西 獨	1964	1.108	9.1%

資料：企業會計 18—9

VIII. 結 論

先進國에서 聯結財務諸表 作成을 要求한 첫째 法은 稅法이고, 둘째 法은 證券去來法이다. 勿論 集團企業의 課稅所得을 正確히 算定하기 爲해서는 聯結財務諸表도 必要하겠지만은 더 重要한 것은 投資大衆 및 債權者의 利益을 保護하는데 있다고 본다.

客觀的인 聯結의 範圍는 한 會社가 다른 會社의 議決權 있는 發行된 株式을 51% 以上 直接 또는 間接으로 實際所有할 때 聯結關係가 發生된다. 即 이때 會社間에 支配從屬關係가 생긴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實態에서 上述한 客觀的인 聯結에 該當되는 集團企業은 드물다. 이런 點으로 보아 聯結財務諸表 作成을 法으로 強制한다는 것은 時期尙早다.

現行의 企業會計原則이 「上場法人 等の 企業處理에 關한 規定」으로 規定되어 1976年初부터 施行을 하게 된다고 하나 事實上 이 法의 適用을 받아 作成되는 財務諸表는 結合財務諸表가 될 것이다. 또 非上場會社가 強制로 이와 같은 財務諸表를 作成한다면 作成의 目的은 投資家 保護가 아닐 것이다. 如何間 聯結財務諸表 導入에 있어서 企業實務上 實效를 얻기 爲해서는 조속 聯結納稅申告制度를 稅法에 採用하는 일이다. 聯結財務諸表의 圓滑한 運營을 爲해서는 전문 會計士의 協助가 時急하며 實務者를 爲한 繼續的인 教育이 學校와 現場에서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Korean Companies.

Park, Han joon

Summary

The objective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s to present the financial position and operating result of the parent firm and its subsidiary as a single entity to the stockholders and creditors. It also provides very useful information for managerial decision-making to the management of the controlling firm.

If the consolidated tax were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onsolidated income, better taxation could be achieved. It may be desirable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raise domestic accounting practices up to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s prevented at present inadequate financial positions and operating results between affiliated firms. Reference has been made to the necessity for owning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of a subsidiary-either directly or indirectly-in order to justify inclusion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Yet, in point of fact, effective managerial control may well exist short of this critical percentage. On occasions, effective managerial control may exist without the ownership of any voting shares. A few stockholders owning less than 10 percent of the shares may exercise control at the meeting by getting most of the proxy votes from stockholders who own small number of shares.

Without the ownership of shares of stock, one company may control another by sending directors. Although the ownership of shares of stock of less than 50 percent is not included in the consolidation, it is very useful for management that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which include all minority interest firms, are prepared. In some cases in Korea,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re more useful tha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minority interest, the goodwill and the consolidated retained earnings of England, Germany, and the U.S.A.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adopted for Korean tax law, it must be carefully

constructed to avoid too much work for the accounting departments of the business involved.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stock exchange and business law in terms of the consolidation of firms. When we compare the situation of developed countries with our country, we feel that it is too early to adopt this system.

I think, if we expect to increase the usefulnes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e should adopt the consolidated tax return.